선정당사자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선 정 자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와 같음

피 고

윤석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재)

2. 김건희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I. 당사자 관계

- 1.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 등'이라 합니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2. 선정자 등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공통의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OOO을 모두를 위한 선정당사 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3. 피고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중 2024. 12. 3.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2025. 3. 25.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2024헌나8)으로 파면된 자이고, 피고 김건희는 피고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불법행위에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 Ⅱ.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피고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모하여 2024. 12. 3.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아 가 국민 살해를 계획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의 동기: 사적 이익을 위한 국가권력의 사유화

가. 이 사건 불법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피고 김건희를 둘러싼 총체적 사법 리스크, 이른 바 '김건희 리스크'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16개에 달하는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추진되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 특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피고 김건희의 불법 행위가 담긴 '황금폰'의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계엄이 국가 안보가 아닌, 오직 피고들 개인의 사법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2. 피고들의 공모 및 위헌적 계엄 선포 실행

가. 피고 김건희의 공모 및 직접 관여

피고 김건희는 불법행위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계엄 음모의 핵심 공모자로서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① 피고 김건희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국가 기밀 통신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계엄의 핵심 공모자인 노상원 등과 비밀리에 소통하는 등 비선 조직을 통해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② 특히, 계엄 실행 계획을 논의한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이 피고 김건희와 직접 통화하는 모습이 복수의 참석자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김건희가 범행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까지 내렸을 수 있는 능동적인 공모자였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나.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및 헌정질서 파괴

피고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피고 김건희와 공모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총괄 지휘하였습니다.

①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중대한 위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 등의 부서, 국회에 대한지체 없는 통고 의무를 모두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2024헌나8)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② 국회 기능의 폭력적 마비 시도: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본관을 파손,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유린하였습니다.

③ 국민 기본권의 전면적 침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 포고령을 답습하여, 영장 없는 체포·구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 3. 불법행위의 극단성: '내란목적살인' 계획의 수립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는 단순히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박탈하려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내란목적살인'계획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노상원 수첩'에는 피고들의 지휘하에 약 500명의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 비판적인 국민을 '수거'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들을 \*\*'사살(射殺)'\*\*하려는 충격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 또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하였으며, 심지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이를 범행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외환(外患) 음모'까지 계획하였습니다.

다. 이는 피고들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적으로 살해하려 한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 Ⅲ. 선정자 등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 1. 정신적 손해의 발생 및 심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인하여, 주권자인 선정자 등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위협받았으며, 민주주의가 폭력적으로 유린당하는 모습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 깊은 좌절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 최고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사살'의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선정자 등은 '국가에 의해 살해될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붕괴되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2. 경험칙에 따른 인과관계의 인정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와 선정자 등의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는 경험칙상 명백히 인

정됩니다. 헌정질서가 폭력적으로 파괴되고, 국가가 국민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증명이 필요 없는 사회적 통념입니다(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선정자 등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 Ⅳ. 위자료 액수의 산정

선정자 등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각 100,000원을 청구합니다. 이 금액은 금전적 이익의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피고들의 행위가 국민 개개인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고,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피고들의 불법성이 극단적이고 반인권적인 점, 범행 후에도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는 최소한의 배상으로서 마땅히 인용되어야 합니다.

### V.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 윤석열과 피고 김건희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모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목적살인 계획이라는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권자인 선정자 등은 경험칙상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선정자 등의 이사건 청구는 마땅히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헌법재판소 결정 (2024헌나8)
- 2. 갑 제2호증 김건희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증거
- 3. 추후 소송 진행에 따라 '노상원 수첩' 관련 증거 등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2. 위임장	1통
3. 선정자 목록	1통
4. 선정서	1통
5. 기타 (송달료 납부서 등)	

# 2025년 9월 1일

위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